

데이터 안전활용 방안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 심동욱



2023.09.14.

CONTENTS

I . Intro

II . 가명정보

III . 마이데이터

IV . 인공지능





I Intro

1. 개인정보



▶ 가명정보/개인정보/익명정보의 차이

개인정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성명	홍길동
나이	32세
전화번호	010-1234-5678
주소	서울 종로구 한글길 12

사전에 구체적 동의를 받은범위 내 활용가능

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처리를 통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성명	홍00
나이	30대 초반
전화번호	01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활용 가능

익명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성명	(삭제)
나이	30대
전화번호	(삭제)
주소	서울특별시

제한 없음

2. 데이터 활용과 재식별 위험



위키미디어, 데이터 개방 사업에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 적용

- ☑ 위키미디어 재단은 지난 20년간 축적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와 페이지뷰 데이터를 차분프라이버시* 기술을 적용하여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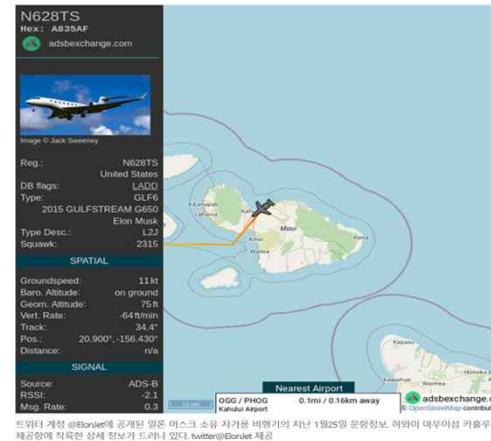
* 차분프라이버시 :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질의에 대한 응답 값을 통해 개인을 알 수 없도록 응답 값에 임의의 잡음(Noise)을 추가하여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프라이버시 모델

사용자의 페이지뷰 : 특정 사용자의 검색습관, 위치정보, 보기 기록, 편집 기록, 기타 행동의 노출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데이터 개방이 어려웠음

유용한 데이터의 공개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차분 프라이버시' 기술을 적용하여 페이지뷰 데이터를 공개

공개된 항공기록 분석을 통한 일론 머스크의 항공정보 파악

- ☑ 미국의 한 대학생이 공개된 항공기록 정보를 분석하여 일론 머스크의 항공정보를 파악



일론젯(@ElonJet)

테슬라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의 자가용 비행기(N628TS)의 이/착륙 시간, 공항, 여행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

- 일론젯 계정은 '20.6월에 개설되어 약32만명 이상이 팔로잉
- 항공 안전을 위해 전세계 항공기들의 운항정보(항공기 식별부호, 위치, 속도, 방향 등)를 1초단위로 방송하는 시스템(ADS-S)의 정보를 활용

3. 데이터 안전활용 관련 주요 정책 변화



▶ 2020년 데이터3법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안전 활용 관련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시행

A

가명정보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 특례제도' 2020년8월 시행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발표('23.7월, 관계부처합동)

B

마이데이터



2023년3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23.8.17., 관계부처합동)

C

인공지능



ChatGPT 등 생성형 AI 이슈 부각('23년 초)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23.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Ⅱ 가명정보

1. 양질의 데이터 제공·공유 확대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활용 성과를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신설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데이터 정책평가시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관련 평가항목 신설 (24)

AI·자율주행

비정형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하여 AI학습,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가명처리 기준

비정형데이터(영상, 음성, 텍스트 등)의 가명처리 기준 마련 (23.下)

합성데이터

스타트업 등 민간 데이터 수요를 조사·반영하여 유망분야별 합성데이터셋을 제작하여 제공 (23.下)

바이오헬스

양질의 **보건의료데이터**의 민간활용 가속화 추진

공공의료데이터

가명처리된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 개방 (23.下)

유전체정보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연구 및 제품·서비스 개발 촉진 (23.下)

2. 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



절차개선

현실 적합성이 낮은 가명정보 처리·활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가명정보 활용 촉진

☑ 절차 간소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법정기구화 및 데이터심의위원회(DRB)-생명윤리위원회(IRB) 간 중복심의 간소화*
* DRB 심의 통과시, 7일 이내 IRB 심의 면제확인서 발급하는 신속절차 신설

규제 합리화

가명정보 관련 규제완화·법적책임 명확화하여 현장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 완화

☑ 자체결합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하고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

자체결합 허용시 부작용

다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의 제3자 데이터 제공 축소
가명정보 결합·반출시 공공성·안전성 약화



보완장치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 실적에 비례하여 자체결합 허용
가명정보 결합·반출에 대한 적정성 평가시 유사 경쟁기관 참여 의무화
자체결합 목적·실적을 투명하게 공시

☑ 법적책임 명확화

- ①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하지 않음
- ②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하였을시,
해당 행위자(제공받은자)만 제재

3. 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



개인정보 안심구역

데이터 처리의 **환경적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대상 既 운영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안심구역 중 추가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우선 지정·시범운영
- 환경적 안전성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모델 적용,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안전조치 마련
*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 처리 과정 전체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안모델

중소·벤처 지원

가명처리 역량·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해소**

- 활용지원센터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내실화 및 추가구축
- 가명처리 솔루션 데이터 유형·분야·목적·기능별로 신뢰할 수 있는 가명처리 솔루션 목록 제공
- 데이터 바우처 가명·익명처리 등 데이터 가공 전 과정을 데이터바우처로 지원

전문 인력

가명정보 처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가명정보 전문인력 지속 양성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인력양성 맞춤형 교육을 통해 가명정보 전문인력 양성 (24년까지 4000명 배출)
- 전문가풀 가명정보 전문가풀 추가 확충(25년까지 100~200명) 및 전문성 제고

4. 가명정보 활용 절차의 안전관리 강화



R&D, 모니터링

AI개발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신기술·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모니터링 및 법률지원 강화

- ☑ 신기술 대응 보호 강화 AI 등 신기술 프라이버시 수준 진단 및 보호 강화 기술, 자동화된 처리 대응권 지원 기술 R&D 추진
- ☑ 모니터링 데이터의 민감성과 처리·결합 과정의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법률지원 지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법률·기술지원 컨설팅' 확대

[참고-1] 통계정보를 활용한 가명정보 활용 사례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실효성 연구

서울시 : 1인 가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1인 가구 규모 파악 및 지표 수집을 설문조사로 수행(정성적 지표)

통계청의 "서울시 거주자의 등록센서스 데이터"와
+
통신사의 "서울시 거주자의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여
=
1인 가구 수, 삶의 질 관련 지표 도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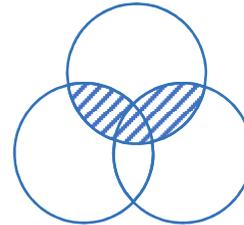


제2회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수사례 부문 대상작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지역격차 분석

(결합목표) 수도권 외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배정과 치료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격차 분석

코로나19 역학조사,
임상증상 정보(질병청, 강원도)



사망원인정보 (통계청) 진료, 영양정보 (심평원)

코로나19 환자의 병상배정과
치료현황을 파악하여
지역격차 분석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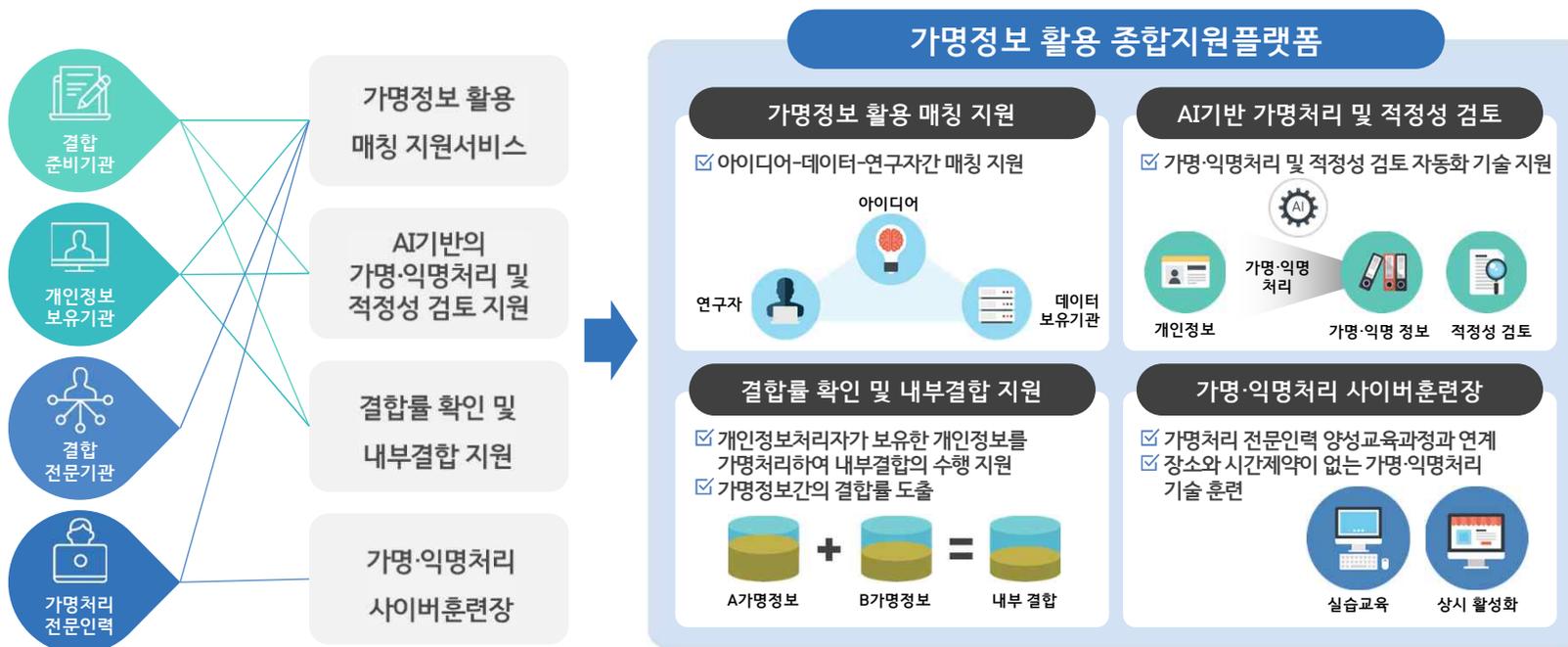
* 결합유형 검토中

제3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참고-2]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 (data.privacy.go.kr)



“ 데이터 중소기업·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의 처리·결합·활용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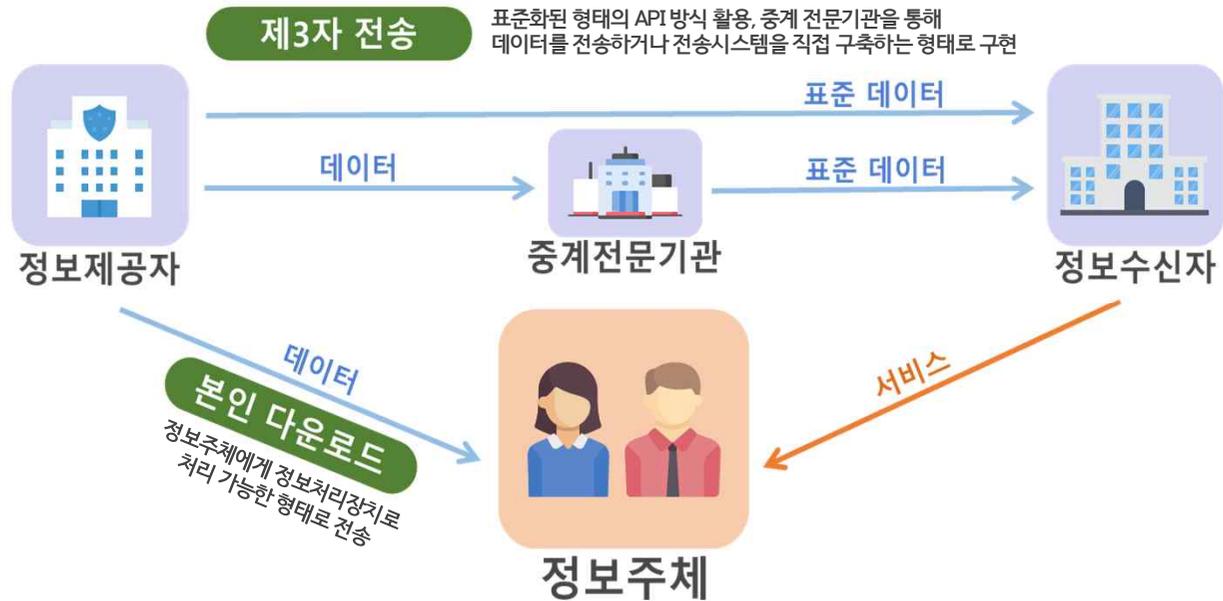
마이데이터

1. 마이데이터 개요



> 마이데이터(MyData)

-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



2. 마이데이터 추진방향



마이데이터로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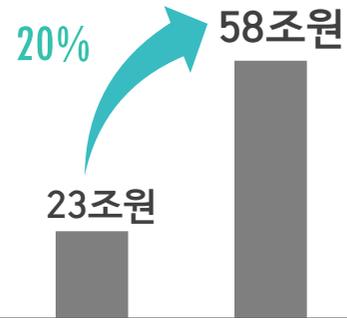
국민 체감서비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

30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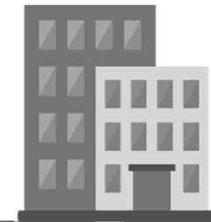
데이터 시장규모



마이데이터 기업

신기술, 서비스 분야 마이데이터 기업

500개 발굴



3. 정보주체 관점에서 중점 추진부문 선정 및 선도서비스 발굴



▶ 마이데이터 10대 중점 추진부문 선정

-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제도 도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을 선정하여 제도 우선 시행
- 2025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중점부문부터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되,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부문 및 분야 단계적 확대

기존부문

보건의료	통신·인터넷 서비스	교통	교육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병·의원) • 의약품(약국) • 웨어러블기기 건강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선통신 • 플랫폼·포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 항공 • 자동차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 교육 • 평생교육 • 온라인 교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쇼핑 • 대형마트

신규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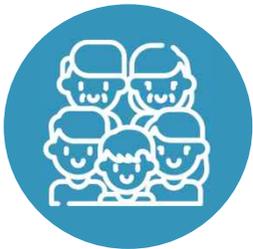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복지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 • 가스 • 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알선·인력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임대·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 여행

3. 정보주체 관점에서 중점 추진부문 선정 및 선도서비스 발굴



▶ 선도 서비스 발굴

- 중점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고,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산업간 데이터 융합·연계 확대



전 세대(공통)

- 합리적인 통신요금 관리
-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전송



청소년기(10대)

- 맞춤형 학습, 교육멘토링
- 병원진료, 봉사활동 증명



청년기(20~30대)

- 맞춤형 일자리 추천
- 청년 맞춤 대출·청약



장년기(40~50대)

- 만성 건강질환 관리
- 에너지·공공요금 통합관리



노년기(60대 이상)

- 독거노인 위급 알림
- 요양내역 알림 서비스

4.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구현



권리보장 원칙



- 필요 정보 최소 수집
- 전송목적 범위 내 활용
- 데이터 활용 목적 명확히 제시



데이터 관리

-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유지
- 지체 없는 정보 전송
- 자체 보유정보와 구분하여 관리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보안·식별 메커니즘



- 부당 전송 유도행위 방지
- 안전한 식별·인증체계 마련
- 전송보안 가이드라인 제시



금지 의무

-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
- 프라이버시 신고센터 운영

5. 플랫폼을 통해 국민의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지원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 전송요구, 전송이력 확인, 전송중단, 파기 등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권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구축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정보주체 권리 보장

- 모든 개인정보 전송이력(전송기업, 데이터 항목 및 날짜 등)을 플랫폼에서 한번에 확인하고 관리
- 전송이력 확인 후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전송
요구

전송
이력
확인

전송
중단

파기

디지털 카탈로그

-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전송 가능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카탈로그 제공



프라이버시 신고

- 부당한 전송유도(다크패턴 등) 및 전송요구 거부, 전송 오류 등 국민 불편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 ※위법사항확인시 신속히 조사·처벌 등 후속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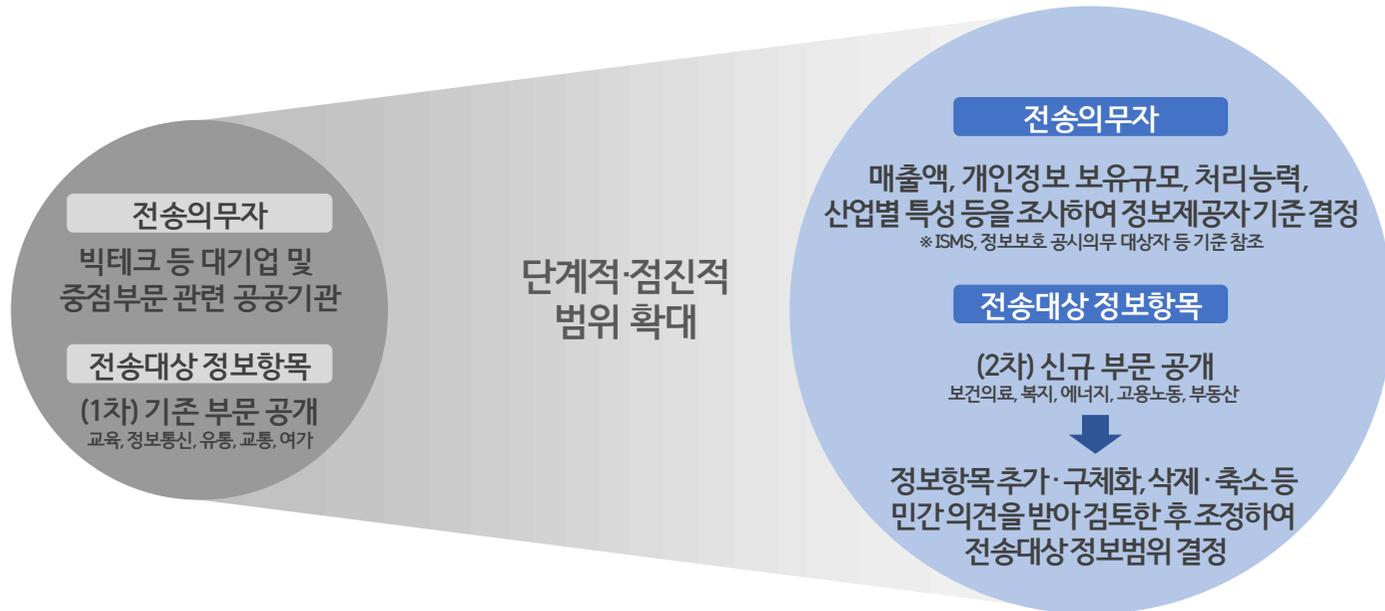


6. 시장 수용성, 기업 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점진적 확대



▶ 전송의무자 및 전송대상 정보항목 범위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요가 높은 부문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제도 도입취지·수용성·준비부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점진적 확대



7. 민간시장의 역동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정책 운용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특수부문 사업 전문기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요건은 면밀히하되,
불필요한 진입규제는 최소화하고 필요한 부문*만 허가·지정제 운영
*정보자체의 민감도, 유·노출시 파급력 및 위험도 등 고려(의료, 미성년 교육정보 등)

지정요건

기술수준 및 전문성

안전성 확보조치

재정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등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분야별 중계 전문기관

정보제공자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표준화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여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등
전송요구권 행사를 지원하는 인프라기관 지정

분야별 지정

민간·공공기관 제한없이 개인정보위
또는 중앙행정기관 장이 지정
*중계집중식, 아카이브식 등 다양하게 검토

표준참조 모델

중계 전문기관 준비 지원을 위해
표준 참조 중계모델 마련

사업분리

특정서비스 몰아주기, 데이터 독과점 등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중계기관과 사업기관 분리

8.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확립



기업 참여유인 제고를 위한 과금체계 수립 및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 각종 지원책 마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API인프라 확장,
클라우드, SW 아키텍처, 데이터 마이닝 확산 추진

데이터 활용으로 안전·복지·범죄예방·재난·
환경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정부·공공 서비스 확대

9. 단계별 추진전략



준비기 ("23~'24년)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집중

주요내용

- (법제도) 전송요구권, 다운로드권, 열람·확인권, 전송·활용 중단권 등 권리 법제화
- (플랫폼) 마이데이터 전 이용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 (표준화) 데이터 형식·전송규격의 공통규칙을 만드는 표준화 추진

도약기 ("24~'25년)
국민이 지지하는 지속가능한 시장 기반 구현

주요내용

- (선도서비스) 마이데이터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서비스 발굴 및 홍보 강화
- (참여유인) 과금체계 수립,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중계시스템 지원 확대
- (프라이버시 보호) 식별·인증체계, 보안체계, 사후재제 등 메커니즘 보강

확산기 ("25~'27년)
서비스 혁신 생태계 고도화

주요내용

- (API 확산) 데이터와 서비스 융복합을 위한 API 경제인프라 확장
- (혁신기업) 클라우드 및 서비스형 SW 전문기업 지원
- (사회 프로젝트) 안전·복지·범죄예방·재난·환경 등 사회적 난제 해결

IV 인공지능

1. 배경



생성형 인공지능 등장



개인정보 침해우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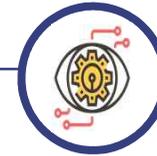
자율주행차·로봇 등에서 데이터 수집



공개된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민감정보의 활용



개인정보위,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23.8.3.)

➡ 인공지능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구체화,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 마련 등

2.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



☑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 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
- 인공지능 서비스도 기술 특성을 고려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중요
 - * 타법익(알 권리,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과 균형있게 비교 형량하여 권리 보장방안 마련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기본방향)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준수
- (고려사항) 인공지능 환경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 고려

- | | | |
|-----------------|-------------|--------------|
| ✓ 목적 적합성 | ✓ 투명성 | ✓ 사생활 침해 최소화 |
| ✓ 적법처리 | ✓ 안전관리 | |
| ✓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 ✓ 정보주체 권리보장 | |

3. 인공지능 모델 서비스 기획 단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 반영

- ☑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 전체 생애 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는 **PbD* 원칙** 적용
* Privacy by Design & Default
- ☑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복잡한 방식으로 처리하므로 **기획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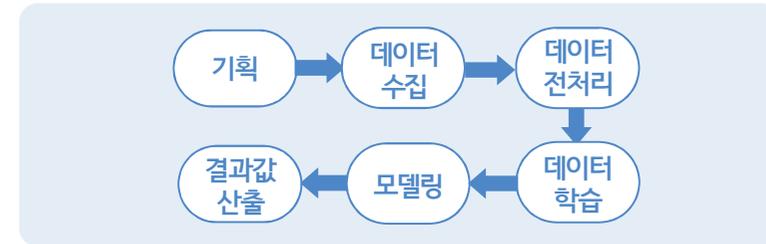
< 주요 조치사항 >

	주요내용
1	인공지능 라이프 사이클별 보호 원칙 및 기준 마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처리근거 명확화 및 적법성 확보
3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등 대응계획 마련
4	데이터 오류·편향·왜곡 및 차별과 편견 최소화 방안 마련·이행

단계별 리스크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 ☑ 사업자 스스로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 제공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리스크 평가**
* 예) 캐나다는 설계 단계에 사업자가 영향도를 판단할 수 있는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 제공
- ☑ 평가 결과에 따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사전 마련

< 참고 : 인공지능 워크플로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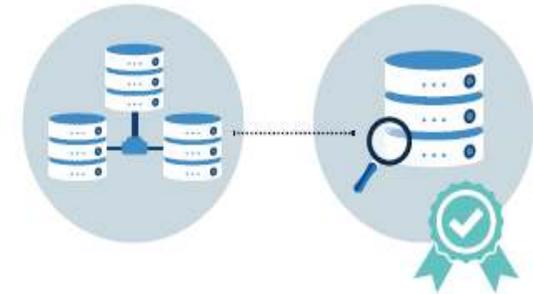


4. 데이터 수집 단계



☑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

- 계약 체결·이행, 법령 준수 등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인공지능 서비스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예측 가능하고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추가적 이용 가능
-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인공지능 개발·서비스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해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 데이터 수집 기준

데이터 구분	주요 내용
공개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개발·서비스가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있었다는 객관적으로 추단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후속과제
영상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여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있어 익명·가명처리 필요 ✓ 향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방안 및 이동형 기기의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기준 구체화 예정 후속과제
생체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로서,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인공지능에 활용 가능 ✓ 생체정보의 특수성(유일성, 불변성)과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 법 체계 마련 계획 후속과제

5. 데이터 학습 단계



☑ 가명정보 특례를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

-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론 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에 활용 가능
- 가명정보를 활용할 경우 데이터 자체의 식별뿐 아니라 인공지능 학습·활용 과정에서 타 정보와의 연계·결합을 통한 식별 위험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연구개발 및 활용

-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ET가 제도적·환경적 제약없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후속과제	주요 내용
합성데이터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를 안전하게 생성하여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PET 적용이 모호한 경우, 보안성·안전성이 확보된 공간에서 기술 개발·실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
R&D	학습용 데이터 생성검증 기술, 인공지능에 대응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개발 등 R&D 확대 추진



6. AI 서비스 단계



실제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구체화 추진

구분	주요내용	후속과제
투명성 제고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처리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설명 가능한 AI 방안 구체화
개인정보 침해방지 	✓ 공개된 정보, 불특정 다수 촬영 영상 등 활용 시 정보주체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 등 마련	-
정보주체 권리보장 	✓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 필요	권리보장 및 오류 대응방안 구체화
API·플러그인 	✓ 파운데이션 모델 등 기존 인공지능 모델의 API를 활용하거나, 기존 서비스에 플러그인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안전조치 필요	-

7. 향후 계획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원칙 기반 규율 추진체계 정립

- AI 관련 컨설팅 원스톱 창구 마련
-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AI 단계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구체화

- 기획-데이터 수집-AI 학습-서비스 단계별 처리기준과 보호조치, 고려사항 제시



민·관 협력을 통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6개 분야별 가이드라인 마련
- 'AI 리스크 평가모델' 마련

국제적 공조체계 강화

-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와 협력체계 강화
- 국내·외 AI 사업자와의 소통 활성화



AI 프라이버시팀 신설
(23.10월)

AI 민간협의회 구성
(23.10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유치(25년)

감사합니다
THANK YOU



Q&A

질의응답

